##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94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김홍걸·강민정·김경만

김영배 · 김영주 · 김한규

유정주 • 이병훈 • 이정문

장경태 · 조은희 · 홍정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CCTV의 영상정보 분실·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최근 대법원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할 경우 '훼손당한 자'에 포함이 안돼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⑤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5조의5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5.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
| 등) ① (생 략)         |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 2                     |
|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    |
|                    | 를 훼손・멸실・변경・위조         |
|                    | 또는 유출하는 행위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⑤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권한       |
|                    | 없이 영상정보를 훼손・멸실・       |
|                    | 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
|                    | <u>아니 된다.</u>         |
| <u>⑤</u> (생 략)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
| 제54조(벌칙) ① (생 략)   |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                     |
|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                       |
|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에 처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4. 제15조의5제2항제3호를 위반   |
|                    | 하여 영상정보를 훼손ㆍ멸실        |

|                    | ・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
|--------------------|--------------------|
| <u>&lt;신 설&gt;</u> | 5.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
|                    |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     |
|                    |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